



‘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정부기업 구현’

경북지방우정청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 개정

1. 관련

- 가. 공무원징계령(2016.1.1.시행, 대통령령 제26656호)
- 나. 우본 운영지원과-474(2016.01.19., 보통징계위원회 설치가능 기관 통보)
- 다.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(제323호)

2.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겠습니다.

가. 주요내용

1)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관할 변경

- 6급 이하 행정·기술직 및 3급 이하 우정직 공무원, 연구사, 전문경력관의 경징계를 관할함 (중징계는 제외)
- ※ 별정우체국장(직원)징계위원회는 변동 없음

2)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구성 변경

-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포함 9인 이상 15인 이내로 확대
- 회의는 위원장과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 (민간위원 4인 이상 포함)
- ※ 별정우체국장(직원)징계위원회도 동일하게 변경

- 붙임 1.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 개정이유 1부
2.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 개정령(안) 1부
3. 경북지방우정정보통징계위원회 설치 및 관할지정 세칙(전문) 1부. 끝.

★주무관

김상혁

인력계획과장

김진만

사업지원국장

손충환

청장

01/20

代정철현

협조자

시행 인력계획과-478 (2016.01.20.) 접수 ()

☎ 41142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(입석동) / www.koreapost.kr/kb

전화 [\(053\)940-1556](tel:0539401556) /전송 0505-005-1957 / kshyuk@koreapost.kr / 공개